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5일  
운 영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8.7. 이동현 의원 외 9명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.8.13.

다. 상정 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19년 9월 5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제정(2018.4.17.)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
- ‘장애’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(안 제5조제1항).
- 일부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됐음.

### 2 준용 법령을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에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, 제5조제1항)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(제34조)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,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‘장애’ 기준에 대해서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.<sup>1)</sup>

1) 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2.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3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
4.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

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략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
3. 생략

② 생략
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

② 생략

- 「공무원연금법」은 1960년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 제도를 함께 규정해왔으며, 현행 조례는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일부(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, 장애등급 등)를 준용했음.
- 그런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고자 2018년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별도로 제정됐음.
- 따라서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, 현행 조례의 준용 기준을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에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제정된 상황에서,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동현, 고병국, 권영희, 김태호, 김혜련,  
신정호, 오한아, 이광호, 최 선, 최응식  
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제정(2018.4.17.)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‘장애’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 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(안 제5조제1항).
-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1호 중  
“제61조 단서”를 “제61조제2항”으로 하며, “공무시행”을 “공무활동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”을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 
시행령」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  
급까지”를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애등급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란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회기(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)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한 <u>공무시행</u>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의 <u>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<u>제1급부터 제14급까지</u>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제61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활동</u>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<u>별표 2의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</u>-----.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----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애등급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